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6

## 서울북부지방법원

### 제 1 - 2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23노1782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검 사 최한얼(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도세훈, 이성훈, 장성민, 안갑철, 신민수, 김승선, 나상  
혁, 박세영, 임지언, 백민영, 고다연, 정민수, 이성우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고단506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고, 그 인지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동을 오인하고 있고, 참고인 B의 진술에 반하며, 사건 이후의 행동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상태였으므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객관적 상황에 반하고,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 참고인의 진술과 모순되어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남자친구인 C에게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며 피해를 호소하였고, 2022. 1. 15.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해자가 2022. 1. 21.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날 인생에서 첫 번째 블랙아웃이어서, 뭘 인정해야 하는지 몰라' 라는 답장을 보냈을 뿐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실시한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친구 C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와인 6병 가까이 마셔 만취한 상태) 피해자를 기습추행하고, 그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이고,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6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성진 \_\_\_\_\_

                 판사      남선미 \_\_\_\_\_

                 판사      이재은 \_\_\_\_\_